

약국개설등록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

[신청인(개설자) 현황]

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면허종류	면허번호	주소	연락처		
					집	휴대폰	전자우편

신청 내용	[] 신규등록	[] 개설자 변경	
	약국	명칭	요양기관기호(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적지 않습니다)
		연락처 (전화) (팩스) (전자우편)	영업면적
		소재지	
결격 사유	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	[] 있음 [] 없음	
	약사(藥事)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	[] 있음 [] 없음	

「약사법」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한약사 면허증 사본(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,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)	수수료 10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약사 면허증(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,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3조)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→

접수

→

시설조사

→

기안·결재

→

등록증 작성

→

등록증발급

신청인

처리기관: 시·군·구